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. 11. 6 선고 2024가단4359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1. 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나. 4,4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9. 1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,
다. 2024. 10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,1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1,169,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

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3. 일부기각

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24. 8. 28. 현재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 합계 1,169,36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, 피고가 원고에게 관리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대신 납부하여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판사신혁재

별지